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9월 6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월 5일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9. 3.(금)	담당부서	에너지안전과
담당과장	홍순파 과장(044-203-3980)	담 당 자	최재영 사무관(044-203-3982)

산업부, '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' 결과 발표

- 자가용·사업용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·대행사업자 등 **총 334개소 대상 실시**
-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**중대 위법사항 26개소 행정처분**(벌금, 과태료 등) 조치 계획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문승욱)는 5~6월동안 **주요 전기설비**와 **전기안전관리 위탁·대행사업자 등 334개소**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,

○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**26개소**에 대해 **업무정지, 벌금, 과태료 등 행정처분**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

□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**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**을 목적으로 **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 근거하여 실시**하는 조사이며,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시행('21.4.1.) 후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임

□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전기설비 중 **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**되는 **취약시설*을 대상**으로, **산업부·지자체·전기안전공사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**으로 실시하였음

* 실태조사 선정대상은 국민신문고 민원접수, 전기안전공사·기술인협회 등을 통해 파악된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으로서, 전기사업용·자가용전기설비 281개소, 대행사업자 53개소

○ 실태조사 결과, **174개소**(52.1%)**의 사업장**에서 '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, 점검항목 일부 누락' 등 **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**가 확인되어,

○ 해당 사업장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**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·보완을 권고**하고, 안전관리규정 작성* 안내 등 **업무 지도·조언**을 실시하였음

□ 한편, **일부 사업장 및 대행사업자 등 26개소**(7.8%)에서는 '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선임신고 사항 불일치' 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**중대한 위법 사항**이 **확인**되어,

【 실태조사 결과 중대 위법사례(26개소) 】

- (**안전관리자 미선임**) 경기 남양주 OO섬유, 경기 포천 OO산업 등 13개 사업장
- (**안전관리 기록서류 미작성·미보존**) 인천 남동구 OO기전, 서울 서대문구 OO스포츠센터 등 7개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(상주 또는 대행)
- **(대행업무 운영 부적정*)** 서울 서초구 OO기술단, 전남 영암군 OO전기안전 등 대행사업자 6개소

* 등록요건 미달,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량 초과,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사항 불일치 등

○ 상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**위반정도 및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**(벌금, 과태료, 업무정지 등) 조치하고,

○ 행정처분 결과를 **'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'에 공개**하여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임

□ 아울러,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**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하여 안전관리업무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**할 계획임을 밝혔음

【붙 임】 1.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
2. 행정처분 대상 현황
3.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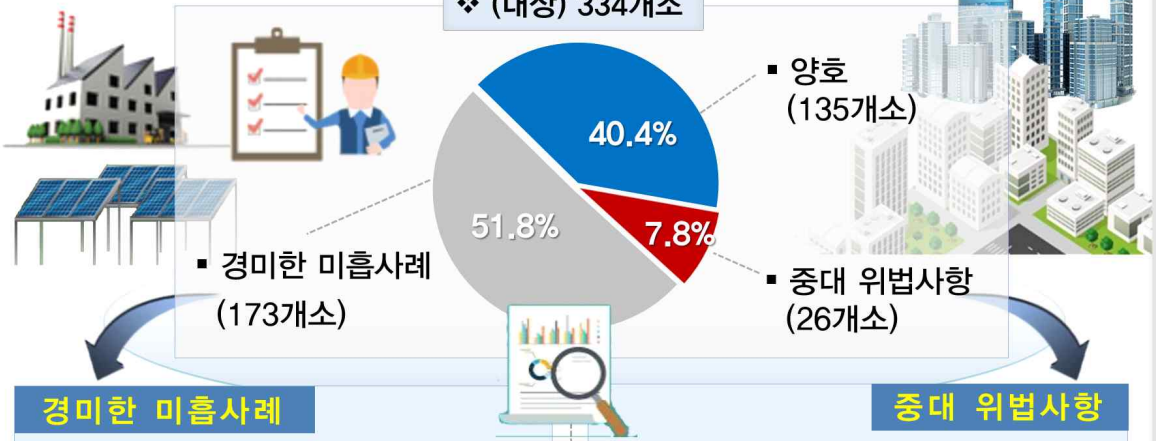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재영 사무관(☎044-203-39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**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**

2021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

- 조사목적 :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방지 및 사고예방
- 조사대상 : 334개소 (사업용 · 자가용전기설비 281개소, 대행사업자 53개소)
- 조사기간 : '21.5~6월 / 산업부, 지자체,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 합동

조사결과



경미한 미흡사례

- 안전관리 기록작성 미비
- 점검항목 일부 누락
- 계측장비 미교정 등

→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개선권고(시정조치)

중대 위법사항

-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(13개 사업장)
- 안전관리 기록서류 미작성(7개 사업장)
- 대행업무 운영 부적정(6개 사업자)

→ 행정처분(벌금, 과태료, 영업정지 등) 조치

제도개선

01 실태조사 강화	▪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수시 추진 * 지자체, 유관기관 등 협업체계 구축, 전문기관(전기안전공사) 내 전담팀 상시 운영
02 관련규정 개정	▪ 실태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 및 개선의견 검토 → 법적 · 제도적 장치 보완 *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과정 확대 등 전문성 강화, 전기안전관리 선임제도 규제 합리화 등

붙임 2 **행정처분 대상 현황**

□ 사업용・자가용 전기설비 (20개소)

❶ (벌금: 13개소)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(500만원 이하)

< 세부 위반 내역(13개소) >

연번	상 호	지 역	미선임 기간
1	○○○건물	인천 계양구	3개월 ('21.5.26. ~ 현재)
2	(주)○○○○○○이엔지	전남 곡성군	6개월 ('21.2.23. ~ 현재)
3	○○태양광발전소	세종시 금남면	4년 10개월 ('16.10.31. ~ 현재)
4	(주)○○스틸	충남 당진시	4개월 ('21.4.31. ~ 현재)
5	○○○타운	경기 용인시	1년 5개월 ('20.4.9. ~ 현재)
6	○○산업	경기 포천시	9년 2개월 ('12.6.27. ~ 현재)
7	○○○가구	경기 남양주시	13년 8개월 ('07.12.31. ~ 현재)
8	○○섬유	경기 남양주시	17년 3개월 ('04.6.10. ~ 현재)
9	○○타워(주)	경기 남양주시	9년 4개월 ('12.5.9. ~ 현재)
10	㈜○○○○○리조트	강원 평창군	10개월 ('20.10.31. ~ 현재)
11	(주)○○테크	강원 원주시	4개월 ('21.5.10.~ 현재)
12	○○○영농업조합법인	전북 순창군	9개월 ('20.11.30. ~ 현재)
13	(주)○○○테크	경남 김해시	8개월 ('20.12.15. ~ 현재)

❷ (과태료: 7개소) 안전관리기록 미작성·미보존 등 (200만원)

< 세부 위반 내역(7개소) >

연번	상 호	지 역	선임형태	위반 내용
1	○○○○스포츠센터	서울 서대문구	대행	안전관리 기록서류 확인불가
2	○○기전	인천 남동구	대행	안전관리 기록서류 확인불가
3	㈜○○○○○코스메틱	인천 남동구	대행	점검기록 서류 미작성
4	㈜○○○○○(태양광발전)	인천 중구	대행	안전관리 기록서류 확인불가
5	㈜○○○○○○○○○ 태양광발전	인천 남동구	상주	안전관리 기록서류 확인불가
6	○○태양광발전(주)	강원 삼척시	상주	안전관리 기록서류 확인불가
7	○○주택개발(주)	경남 양산시	상주	점검기록 서류 미작성

□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(6개소)

❶ **(업무정지 처분: 2개소)** 등록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 초과,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량 초과 (1회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처분)

< 세부 위반 내역(2개소) >

연번	사업자명	대표자	지역	위반사항	비고
1	○○○○ 안전기술단	김OO	서울 서초구	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량 초과	**1인당 대행 가능 가중치(78점) 초과** → 대표가 140점 수행
2	㈜○○ 전기안전	정OO	전남 영암군	등록요건 미달 (1개월 초과)	**계측장비 미보유** (절연유내압, 절연유산가, 특고압 조작봉, 적외선열화상)

❷ **(과태료: 4개소)**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 한 경우 (80만원)

< 세부 위반 내역(4개소) >

연번	사업자명	대표자	지역	위반사항	비고
1	○○○○○○ 관리	이OO	서울 종로구	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미실시 (선임 신고사항 불일치)	선임자와 실제 점검자 상이
2	○○○ 전기안전관리	송OO, 김OO	인천 남구	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미실시 (선임 신고사항 불일치)	선임자와 실제 점검자 상이
3	㈜○○○○ 안전공사	강OO 외2명	경남 창원시	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미실시 (선임 신고사항 불일치)	선임자와 실제 점검자 상이
4	○○○테크	구OO	경남 김해시	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미실시 (선임 신고사항 불일치)	선임자와 실제 점검자 상이

붙임 3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

□ 벌금 및 과태료 기준

조치	위반내용	근거법령	벌칙조항	처분기준
벌금	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(미선임 사업장)	법 제22조 제1~4항	법 제48조	500만원 이하 벌금
	정기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법 제11조	법 제50조	100만원 이하 벌금
과태료	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 제5항	법 제52조 제1항제3호	300만원 이하 과태료 (200만원 부과)
	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한 경우	법 제22조 제6항	법 제52조 제1항제4호	300만원 이하 과태료 (200만원 부과)
	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보존·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4조 제3항	법 제52조 제1항제5호	300만원 이하 과태료 (200만원 부과)
	변경등록 중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	법 제26조 제2항	법 제52조 제1항제7호	300만원 이하 과태료 (200만원 부과)
	전기안전관리자의 선·해임 신고·변경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를 한 경우	법 제23조 제1항	법 제52조 제2항제5호	100만원 이하 과태료 (80만원 부과)

* 처분기준의 과태료 금액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(별표 5)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

□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(대행사업자)

위반내용	근거법령	행정처분 기준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위반
법 제22조제2항,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	법 제27조 제2항제2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등록취소
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범위 및 업무량 초과 또는 최소점검횟수 미달	법 제27조 제2항제3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등록취소